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01 발의연월일: 2022. 1. 21.

발 의 자:박 정·이병훈·송옥주

오영환 · 이상헌 · 윤후덕

유동수 • 양기대 • 전용기

도종환 • 유정주 • 어기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(제10조), 대중골프장의 병설 의무 부과 조항에서 대중골프장을 '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'이라고 규정하고 있음(제14조). 위 법 조항 및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,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면제,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,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,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,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,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,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 골프장업 분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'회원제 골프장업'과 '비회원제 골프장업'으로 구분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,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(안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4조 등).

법률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제10조의2에 따른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골프장업의 세부 종류)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회원제 골프장업: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
 - 2. 비회원제 골프장업: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 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의 제목 "(대중골프장의 병설)"을 "(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)"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"회원을 모집하는"을 "회원제"로, "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 는 골프장(이하 "대중골프장"이라 한다)"을 "비회원제 골프장"으로 하며, 같 은 조 단서 중 "대중골프장을 직접"을 "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"으로, "대중 골프장을 병설하기"를 "비회원제 골프장을 병설하기"로, "대중골프장 조성비"를 "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"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"(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)"을 "(비회원제 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대중골프장 조성비"를 "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"로, "대중골프장의"를 "비회원제 골프장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대중골프장 조성비"를 "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"로, "대중골프장의"를 "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"로, "대중골프장의"를 "비회원제 골프장의"로 한다.

제21조 중 "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"를 "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"로, "회원을 모집하는 해당"을 "해당 회원제"로 한다.

제30조제5호 중 "병설 대중골프장업"을 "비회원제 골프장업"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제2호 중 "대중골프장의"를 "비회원제 골프장의"로, "대중골프장 조성비"를 "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"로 한다.

법률 제8349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"대중골프장"을 각각 "비회원제 골프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체육시설업의 구분·종류)	제10조(체육시설업의 구분·종류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	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제10조
	<u>의2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골프장업의 세부 종류)
	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
	음 각호와 같다.
	1. 회원제 골프장업: 회원을 모
	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
	2. 비회원제 골프장업: 회원을
	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
	<u>골프장업</u>
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
	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
	의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
	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
	<u>정할 수 있다.</u>
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
	항의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
	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14조(대중골프장의 병설) 시・	제14조(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)

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회원을 모집하는</u> 골 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<u>회원을 모집하는</u> 골프장(이하 "대중골프장"이라 한다)을 직접 병설(並設)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<u>대중골프장을 직접</u>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<u>대중골프장을</u>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대중골프장 조성비"라 한다)을 예치 (豫置)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) ①대중골프장 조성비 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<u>대중</u> 골프장의 설치·운영을 위한 사 업에 투자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<u>대중골프장 조</u>성비의 투자·관리와 <u>대중골프</u> <u>장의</u>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체육시설의 이용 질서) <u>회</u> 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 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

<u>회원제</u> 비회위
<u>제 골프장</u>
· <u>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</u>
비회원제 골프
장을 병설하기
비회
원제 골프장 조성비
제15조(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
관리 및 사용) ①비회원제 골프
<u>장 조성비 비회원</u>
제 골프장의
② 비회원제 골프
장 조성비 비회원제
골프장의
제21조(체육시설의 이용 질서) <u>회</u>
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
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

에 관하여 <u>회원을 모집하는 해</u> 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. 제30조(시정명령) 시·도지사, 시 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 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 장업과 <u>병설 대중골프장업</u>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
 6. ~ 8. (생 략)

제32조(등록취소 등) ① (생 략)

②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 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제14조에 따른 <u>대중골프장의</u> 병설 또는 <u>대중골프장 조성비</u> 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<u>해당 회원제</u>
제30조(시정명령)
 1. ~ 4. (현행과 같음) 5
o. <u>비회원제 골프장</u>
업 C 0 (청체고 가 0)
6. ~ 8. (현행과 같음) 제32조(등록취소 등) ① (현행과
같음)
②
 1. (현행과 같음)
1. (현 8의 필요) 2 비회원제 골프
<u>장의 비회원제 골프장 조</u> <u>성비</u>

- 3. ~ 7. (생략)
- ③ (생략)

법률 제8349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

제3조(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 과조치 및 적용시한) ①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 • 이 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 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 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 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 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 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 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 여야 하며, 대중골프장의 병설 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 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 (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 • 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중골 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

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8349호 체육시설의
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전부개정법률 부칙
제3조(<u>비회원제 골프장</u> 병설에 관
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) ① -
<u>비회원제 골프장</u>
<u>비회원제 골프장</u>
비회원제 골프장
비회원제 골프장
비회원제 골프장
<u>비회원제 골프장</u> -
비회원제 골프
<u>장</u> 비회원제 골프장-
②

9호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 한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 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. 다 만,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<u>대중</u> 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<u>대중골프</u> 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 는 같은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할 수 있다.

비회원제
<u>골프장</u> 비회원
제 골프장